



다. 현 위탁자 현황: 없음

라. 위탁개요

- 1) 위탁운영기간: 위탁일로부터 5년간
- 2) 위탁사무내용: 노인요양시설 운영 전반
- 3) 수탁기관 선정방식: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
- 4) 운영재원: 장기요양급여비용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, 후원금, 법인전입금 등
- 5)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(단위: 천 원)

위탁연도	소요예산	산출근거	비고
계	1,588,800		
2023년 ~2024년	500,000	- 고성군치매요양원 내외부 개보수 1식 · 설계비 및 설비(소방·전기·배관)보수: 298,320 · 창호 및 각종 출입문 보수: 27,000 · 방수·도장 및 균열 보수: 174,680	
2024년	214,880	-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: 303천 원×30명×12월 = 109,080 - 종사자수당: 1인당 연간 2,600천 원×40명 = 104,000 - 사회복지사수당: 30천 원×5명×12월 = 1,800	
2025년	216,320	-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: 307천 원×30명×12월 = 110,520 - 종사자수당: 1인당 연간 2,600천 원×40명 = 104,000 - 사회복지사수당: 30천 원×5명×12월 = 1,800	
2026년	217,400	-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: 310천 원×30명×12월 = 111,600 - 종사자수당: 1인당 연간 2,600천 원×40명 = 104,000 - 사회복지사수당: 30천 원×5명×12월 = 1,800	
2027년	219,200	-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: 315천 원×30명×12월 = 113,400 - 종사자수당: 1인당 연간 2,600천 원×40명 = 104,000 - 사회복지사수당: 30천 원×5명×12월 = 1,800	
2028년	221,000	-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: 320천 원×30명×12월 = 115,200 - 종사자수당: 1인당 연간 2,600천 원×40명 = 104,000 - 사회복지사수당: 30천 원×5명×12월 = 1,800	

※ 인건비, 시설운영비 등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충당

※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시행 연도 변경 가능

### 5. 기대효과

가.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전문성, 재정능력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요양시설로서 시설운영 정상화

## 6. 향후 추진계획

### 가. 추진계획

- 2023. 7. 기능보강 예산 제2회 추경 반영
- 2023. 7.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
- 2023. 7. 위탁기관 선정·심사
- 2023. 9. 위탁운영 계약 체결

## 7. 참고사항

- 가.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: 붙임 1
- 나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: 붙임 2
- 다. 관계법령: 붙임 3

## 8. 전문위원 검토요지

### 가. 동의안 제출 배경(필요성)

- 2022.7.31. 폐지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재개하기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### 나. 동의안 내용 검토

-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타당성
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, 「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.
  - 치매전문요양원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보호·돌봄 시설로, 서비스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서비스 등 사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지식과 현장 경험이 축적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- 수탁기관 선정 방법의 적정성
  - 「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,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
  - 본 동의안의 위탁 기간은 2024.1.1.~2028.12.31.(5년)으로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 제2항, 「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 제2항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절함.
- 민간위탁운영 소요 예산의 적정성
  -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장기요양급여로 충당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(국도비보조), 종사자수당(도비보조), 「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수당(군비)을 보조금으로 교부함.

#### 다. 종합의견

- 위와 같이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,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9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10. 토 론 : 없음.

11. 심사결과 : 2023. 7. 12. 원안 가결함.